

무기이전결정에
어떻게
인권기준을
적용할 것인가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앰네스티 출판부

2008년 초판발행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
국제앰네스티 출판부
영국 런던 WC1X 0DW
1 Easton Street
피터베넨슨 하우스
www.amnesty.org

2010년 7월 번역본 발행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국제앰네스티 문서번호: ACT 30/008/2008
원문 언어: 영어

국제앰네스티는 전세계 150여개국 220만명 회원이 인권 보호를 위해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모든 사람이 세계 인권 선언과 다른 국제인권기준에 명시된 모든 인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정부나 정치적 이데올로기, 경제적 이익 및 종교로부터 독립된 단체이며, 회원들의 회비와 일반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AMNESTY
INTERNATIONAL



무기 이전 결정에 어떻게 인권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 2

- 1. 국제 인권 문헌..... 2
 - 가) 유엔 헌장..... 2
 - 나) 인권 조약..... 2
- 2. 국가의 인권 의무..... 4
 - 가) 분쟁 상황에서의 국제인도법 및 인권법..... 5
 - 나) 국제형사법..... 6
- 3. 국제인권법 적용에 있어서의 핵심 개념..... 6
 - 가) 처벌적 접근이 아닌 예방적 접근..... 6
 - 나) 공정성 및 객관성..... 7
- 4. 이전 결정에 대한 국제인권법의 실제적 적용..... 7
 - 가) 수입국의 태도..... 7
 - 나) 재래식 무기의 특징과 최종 사용자 및 사용에 대한 평가..... 8
 - 다) 재래식 무기의 특징에 대한 평가..... 8
 - 라) 최종사용자 평가..... 8
 - 마) 전용(diversion) 위험..... 9
 - 바) 결정 내리기..... 9
 - 사) 어느 시점에서 “실질적” 위험이 있다고 할 것인가?..... 10
 - 아) 국내 입법..... 11
- 5. 정보 출처..... 11
- 부록: 국제인권문헌..... 12

무기 이전 결정¹에 어떻게 인권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

국제 무기 거래를 보다 효과적이고 책임 있게 규제하기 위해서는 모든 재래식 무기, 군수품, 장비의 국제 이전²(이하 '재래식 무기의 이전')이 국가의 국제법적 의무와 그러한 의무 이행을 위한 국내법률과 정책에 따라야 한다. 모든 국가는 국제인권법에 따른 의무를 지며 이는 재래식 무기의 이전시에도 적용된다. 그러한 의무들은 재래식 무기의 이전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 모든 국가에 적용되며 재래식 무기의 수출, 수입, 경유, 환적, 중개 및 면허생산 등이 그 적용대상이 된다.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국제인권법상의 의무가 재래식 무기의 이전시에 적용됨을 인식하고 있음이 명백하지만³, 이러한 의무의 엄격하고 일관성 있는 적용 또한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 문서는 국가와 지역 기구의 인권 의무 적용을 돕기 위해 기술되었다. 이 문서는 무기 이전이 중대한 인권침해에 사용될 위험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의 가이드라인과 무기 이전 결정을 내릴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들을 제시할 것이다.

1. 국제 인권 문헌

가) 유엔 헌장

모든 유엔 회원국은 인권의 중요성과 국가 활동(재래식 무기 및 군수품의 이전 등을 포함하여)에 있어서 인권 적용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유엔 헌장은 회원국으로 하여금 “인종, 성, 언어, 종교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⁴를 포함하는 전 범위의 인권을 신장 시키도록 요구한다. 유엔 헌장은 또한 회원국이 유엔과 협력하여 인권을 신장하기 위하여 “공동의 조치 및 개별적 조치”⁵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유엔 헌장의 이러한 조항들은 모든 국가들이 자국의 국경 내에서 인권의 보호와 성취를 위해 협력할 적극적 의무를 반영한다.

나) 인권 조약

모든 유엔 회원국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이다. 다음과 같은 조약들이 그 예이다.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 고문이나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관한 협약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¹ 국제앰네스티는 본 보고서 작성을 위해 국제법 자문인인 클레어 다 실바(Claire da Silva)가 법률연구 및 초안작성에 참여했음을 알려준다.

² “이전”은 한 영토, 소유권, 한 국가의 실질적인 통치권으로부터 다른 영토나 소유권 또는 한 국가의 실질적인 통치권으로의 국제 이전을 의미한다. “재래식 무기 및 군수품”에는 군사장비, 중화기, 소형무기 및 경무기, 그 부품과 부분품, 그러한 물자의 이전을 위한 병참 혹은 재정지원 등의 전문성이나 기술, 준군사 장비, 군사경찰 치안용 이중용도품목, 탄약 및 폭발물을 포함하는 군수품,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의 전문성이나 기술이전 등이 포함된다. 주요 무기 수출국들 간의 바세나르체제(Wassenaar Arrangement)는 재래식 무기 규정에 있어 기술적으로 가장 발전된 목록을 만들어왔다.

³ 118개 국가들이 무기 이전 허가 과정에서 인권을 기준으로 하는 지역적 및 다자간 무기 이전 통제 협약에 참여하고 하고 있다.

⁴ 유엔 헌장 제 55조 (C)

⁵ 유엔 헌장 제 56조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현재 인권 보호와 관련해서 일백 개 이상의 국제 조약이 존재한다. 192개의 유엔 회원국은 유엔 헌장, 세계인권선언, 1993년 비엔나 인권선언, 기타 다른 많은 문헌을 통해 인권을 일반 국제법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기로 약속했다.

이 조약 준거들은 인권 기준에 어긋나는 재래식 무기의 이전을 판정할 척도를 제공한다. 인권에는 서열이 존재하지 않으며, 재래식 무기의 사용은 시민 문화·경제·정치·사회적 권리, 여성, 아동, 소수자 및 선주민 집단에 관련된 권리들을 망라하여 인권 기준의 모든 범위에 걸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 (상자 1 참조) 이들 중 많은 수는 특정 조약에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가를 기속하는 “관습적 국제법”의 지위를 획득하였다.

한 국가가 중대한 인권침해에 사용되거나 혹은 사용될 가능성이 존재함을 인지하고도 개인이나 기타 실체에 무기를 공급하거나 그 이전을 허가하게 되면 인권 존중은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상자 1: 어느 시점에 “중대한” 침해가 되는가⁶

각 상황은 건별로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최종 평가는 그 이전을 허가한 국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인권침해의 중대성을 판별함에 있어서는 독립적인 관련 기관, 비정부기구, 유엔 보고서 등의 조사결과와 신뢰할만한 증거들을 참조하여야 한다. (“5. 정보출처” 참조) 그러한 보고서들은 인권침해의 발생과 그 속성을 확인함으로써 무기 이전 국가가 자체적으로 침해의 중대성을 판단하도록 도울 수 있다. 그러한 판단에는 다음 두 가지 양상에 대한 평가가 도움이 될 것이다.

1. **침해의 규모와 지속성:** 당해 권리 침해에 있어서 경향성을 띠는 행위가 존재하는가? 그 인권침해가 지속적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널리 행해지거나 조직적으로 자행되는 인권침해가 가장 중대한 침해에 해당될 것이다.
2. **침해의 속성과 만연성:** 인권침해가 시민·문화·경제·정치·사회적 권리 등의 주요 인권 영역에 해당되는가? 침해되는 권리의 범주와 그 권리의 근본적 속성 또한 인권침해의 전반적 중대성을 판단할 수 있게 해 준다.

⁶ 중대한 인권침해에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996년), 고문이나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관한 협약(1984년) 및 기타 국제인권조약들의 훼손이 허용되지 않는(non-derogable) 조항의 위반 등이 포함된다. 소형무기나 경무기를 포함하여 무기의 사용을 통하여 가장 현저하게 침해될 수 있는 권리는 생명권이다. 이 권리는 국가에게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을 제정할 적극적 의무, 또 어느 누구에게서도 생명권을 임의로 박탈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를 부과한다.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위원회(자유권위원회)는 당사국에 다른 훼손이 허용되지 않는 권리(non-derogable rights)를 제시하고 있다.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일반 논평”은 ICCPR의 제 4조에 포함된 불가침성 권리의 목록을 확장하여 자의적 구금의 금지, 인질행위, 납치 및 불법구금의 금지, 소수집단에 속하는 이의 권리 보호,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근거에 의한 추방이나 강제 이주 금지, 전쟁 선전 금지나 차별, 적대감, 폭력의 선동에 해당하는 민족적, 종교적, 인종적 증오를 옹호하는 활동 참여 금지를 포함시켰다.(UN Doc. CCPR/C/21/Rev.1/Add.11, 2001년 8월 31일)

상자 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상관성

국제법상 국가는 국가를 대신하여, 혹은 그 동의 하에 활동하는 단체나 개인에 의해 자행된 중대한 인권침해에 책임을 진다. 유엔 회원국 3분의 2 이상이 당사국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96년) 제 2조⁷는 “본 협약의 당사국은 특히 입법조치의 채택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한 특히 경제적, 기술적인 국제지원과 국제협력을 통하여, 자국의 가용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동 규약 하의 모든 권리는 존중되고 보호되고 실현되어야 한다. 권리의 침해는 한 국가가 당해 권리의 박탈을 막으려 하지 않거나, 혹은 그러한 권리의 실현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방해할 것을 허용하는 경우 발생한다. 당해 권리의 존중, 보호 및 이행 의무의 위반도 권리의 침해가 될 수 있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부정이 능력의 부재(진정한 자원의 제한 혹은 국가가 알 수 없거나 통제 범위를 넘어서는 환경이 있는 경우)의 결과인 경우에는 국가가 국제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말할 수 없다. 권리의 침해는 의지부족, 태만, 차별의 결과물이다.

이러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의 일부는 무기의 사용으로 야기된다. 예를 들어, 국제앰네스티는 군대나 군대의 위협이 어떻게 대량 강제 퇴거 집행이나, 선주민의 토지권리를 침해, 강제 노동 강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인권옹호자들을 억압하는데 이용되었는지를 문서화 해왔다. 우리는 또한 의료진, 기간 시설, 학교, 상수원, 통신망, 또한 작물과 가정집, 생활을 파괴한 무장 공격을 문서로 기록 해왔다. 무력 분쟁시에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실현이 더욱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규약 상의 의무 훼손(derogation)을 허용하는 그 어떤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 국제인도법(IHL) 하에서도 국가는 교전의 수행 중에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의무를 진다.

국가에게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가 진보적으로 완전히 실현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 및 이러한 권리들의 최소한의 필수적 기본 수준 실현을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정부들은 자원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다루는데 할당하는 대신 군사비 지출 같은 다른 영역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빈번하다. 평균적으로 세계의 부국들은 군사비 지출의 세 배를 보건에, 세 배 가까운 양을 교육에 지출한다. 세계의 빈국들은 보건지출이 군사비 지출에 약간 못 미치며(GDP 기준 2.5%에 대하여 2.1%), 군사비에 비해 고작 50% 더 교육에 지출하고 있다. 이 수치들은 1999년 이래 발전하고 있으나 그 속도는 느리다.⁸ 효과적인 무기거래조약 (ATT)으로 이문제를 풀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⁹

2. 국가의 인권 의무

유엔 헌장과 그외의 조약상의 의무에 따른 인권의 실현 및 증진에 관한 기본적 의무 외에도 국가는 그들의 대리인(경찰관, 군인 등)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¹⁰ 국가는 또한 행위자가 국가의 통제 하에서 행동하던 그렇지 않든, 기업을 포함한 사적 행위자에 의한 인권침해 등의 행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그러한 보호는 그 영토 혹은 관할권 하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 향유를 가로막는 사적행위자에

⁷ 경제적 및 사회적 권리는 많은 다른 인권법 문헌에도 포함되었으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등이 그 예이다.

⁸ 자료출처는 SIPRI 2007 보고서

⁹ “국경없는 무기, 왜 세계화된 거러에 세계적 통제가 필요한가”, 『무기통제』 Control Arms저, (2006.10.2); “총이나 성장이나?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무기 판매의 영향 분석”, 『무기통제』 Control Arms저, (2004.6) 참조. 후자는 군사비 과잉지출이 건강보건, 교육 기타 중요 사회 서비스 제공을 저해하는지를 다룬다. 를 손상시키는 과정을 조명하고 있다.

¹⁰ 소형무기로 인한 인권침해의 예방원리(유엔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소위원회에 의하여 2006년 채택)는 “국가 대리인은 공무원의 교사, 동의 및 묵인에 기하여 활동하는 그 어떤 사람도 포함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한다.

국가 책임에 관한 일반 원칙에 의하면, 만약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인권침해 등의 국제적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알고도 이를 조력하면 그 국가에게도 책임이 전가된다.(상자 3 참조) 원조품을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사용하는 국가에게 무기나 군수품 등의 물적 원조를 제공하는 것도 이러한 조력에 포함될 수 있다.¹¹

상자 3: 국가 책임에 관한 조문

“국제적 위법 행위를 자행하는 국가를 조력하는 국가는 다음의 경우에 그러한 국제적 위법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만일 (a) 그 국가가 국제적 위법행위의 상황임을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조력 행위를 하였으며, (b) 그 국가가 직접 그러한 행위를 하였더라면 국제적 위법행위로 간주될 것이 명백한 경우”

(유엔 국제법 위원회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조문안 제 16조, 유엔총회 A/RES/56/83. 2001년 12월 12일)

“한 국가가 중대한 인권침해를 자행하는데 원조품을 사용하는 국가에 대하여 물질적 원조를 제공하면 그 국가에게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관점에서 유엔총회는 중대한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나라들에 대한 무기 공급이나 기타 군사 원조를 자제할 것을 회원국에게 촉구한 경우가 빈번히 있었다.”

(경제사회이사회 보고서, 유엔총회 제3위원회 보고서, 결의초안 17, 1982년 12월 14일, A/37/745, p.50)

(국가책임규정 초안에 관한 주석서, 제 16조 9항 p.158)

가) 분쟁 상황에서의 국제인도법 및 인권법

국가는 무력 분쟁 중 국제인도법에 따른 구체적 의무를 지며 이러한 의무에는 국제인도법 규칙을 “존중하고 존중을 담보할” 일반적 책임도 포함된다.¹² 국제인도법은 특히 민간인과 적대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자(부상을 입거나, 병을 앓거나, 포획된 병사 등)를 보호하기 위하여 의도된 것이며 무력분쟁 행위를 규제한다.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침해는 국제무력분쟁에 적용되는 4개의 1949년 제네바 협약 및 제 1 추가 의정서에서 규정한 “중대한 위반”을 포함한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도 국제 혹은 비국제 분쟁시에 적용되는 개인적인 형사 책임을 초래하는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 즉 전쟁범죄가 포함되어 있다.¹³

국가는 재래식 무기 이전 승인시에 수입국의 국제인도법에 대한 존중을 고려해야 하며, 무기가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에 사용될 실질적 위험이 있는 경우 그러한 이전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¹⁴

국제인권법은 무력분쟁 상황에도 적용되며 이는 국제인도법이 적용으로 대체되지 않는다. 두 법은 동시에 작용하며 경우에 따라 인권법이 무력분쟁의 상황에 직접 적용될 수도 있다.¹⁵ 국제형사재판소는 국제인도법이 적용되는 상황에서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포함한 인권법이 계속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¹⁶ 시민·정치적 권리위원회(자유권위원회) 역시 무력 분쟁 상황에서 “양 법 체계가 '상호 배타적'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라고 확인하였다.¹⁷ 특히 무력분쟁 중의 국가에 재래식 무기를 이전하는 결정은 수

¹¹ 유엔국제법위원회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조문안(국가책임조문) 제 16조, 유엔 총회, A/RES/56/83, 2001년 12월 12일. 국가책임조문의 관습법적 지위는 국제사법재판소의 2007년 2월 26일 (보스니아 대 세르비아) 집단살해 사건 판결에서 확인되었다.

¹² 4개 1949년 제네바 협약 공통 제 1조

¹³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 제 8조

¹⁴ 무기 이전 결정 과정에서의 국제인도법의 적용에 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무기이전결정: 국제인도법 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참조, ICRC, 제네바, 2007년 6월

¹⁵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어떤 권리들은 국제인도법의 독점적 적용대상일 수 있고 어떤 것들은 인권법의 독점적 적용대상일 수 있으며, 또 다른 어떤 것들은 이 두 갈래 국제법 양 쪽의 적용 대상일 수 있다.”라고 명시했다. 국제사법재판소,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내 장벽건설의 법적 결과”, 권고적 의견, 2004년 7월 9일 2004106

¹⁶ 국제사법재판소,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내 장벽 건설의 법적 결과”, 권고적 의견, 2004년 7월 9일 항목 107-112

¹⁷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위원회,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당사국에 대한 일반 법적 의무의 본질에 관한 일반 논평 31호, CCPR/C/21/Rev.1/Add.13, 2004년 5월 26일, para 11

입국의 국제인도법에 대한 존중을 고려해야 할 뿐 아니라 그러한 무기 이전이 인권을 침해하는데 사용될 실질적인 위험이 있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

나) 국제형사법

국제형사법 역시 국가의 무기 이전 결정에 관련이 있다. 모든 국가는 국제범죄나 그러한 범죄의 시도를 알고도 이를 지원하는 개인 혹은 실체에게 재래식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금지할 의무가 있다.

로마 규정은 범죄의 실행 혹은 범죄 시도를 돕거나 교사하고, 또는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등 기타 조력하는 경우에 있어서 개인 형사 책임이 발생함을 규정하고 있다.¹⁸ 국제형사재판소가 관할권을 갖는 범죄 중 하나를 저지르는데 사용되는 무기를 공급하는 행위도 개인 형사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다.

로마규정 하의 국제범죄에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집단살해, 침략범죄가 포함된다. 어떤 침해 행위, 예를 들어 생명권 침해 또는 고문 금지 위반은 민간인 집단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공격의 한 부분으로 자행되었을 경우에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이외에도 살인, 노예화, 감금, 주민의 강제이주, 성폭력, 강제실종 등도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된다.¹⁹

3. 국제인권법 적용에 있어서의 핵심 개념

무기 이전 결정 과정에서 국제인권법을 적용하는 근본적인 목적 중 하나는 더 책임 있는 재래식 무기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기 이전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다음 두 가지 원칙이 포함되어야 한다.

- (i) 중대한 인권침해 예방
- (ii)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

가) 처벌적 접근이 아닌 예방적 접근

재래식무기 및 군수품이 보다 책임 있게 거래되려면 국제인권법에 기초한 이전 허가 결정이 중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수단으로서 우선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따라서, 의사결정 과정은 “예방적 접근”의 틀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 그러한 접근방식은 보안군 등의 특정한 집단이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실질적 위험이 있음을 나타내는 확실하고 믿을만한 정보가 있는 경우 무기 이전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질적 위험에 대한 정보가 있을 경우, 다음 할 일은 무기로 인한 추가적인 중대한 침해 위험이 감소할 때까지 무기의 이전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개념화 과정을 통해 무기 이전 결정에 국제인권법을 적용하는 일은 무책임한 국제무기거래를 예방하고 통제목록에 포함되는 군사보안 장비들의 사용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무기통제에 있어서 “처벌적” 접근과 구별된다. 처벌적 접근법은 무기 이전 결정 과정을 불특정 “불량 인권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국가는 무기 이전을 받을 수 없다는 단 하나의 과정으로 압축시킨다. 그러한 접근방식은 한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법한 군사적, 안보적 및 정책적 필요가 있음(법의 지배에 대한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한에서)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다. 또 그러한 접근방식은 잠재적인 수출국과 수입국 사이에서의 건설적 대화의 기회를 봉쇄하여, 특정 무기 이전 결정의 전제조건으로서 예방적이고 개선적인 조치가 논의되고 이행되어서 중대한 인권침해에 무기를 사용할 실질적 위험을 줄일 가능성을 차단한다. 예를 들어 『법집행 공직자의 무력과 화기 사용에 대한 유엔 기본 원칙』에 부합하도록 경찰 및 군대를 훈련하는 것과 책무성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간의 합의 조치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기존의 국가관행과 국제 법정이 부과하는 개선적 조치에

¹⁸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 제 25(3)(c)조

¹⁹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 제 7조

부합한다.

상자 4: 예방적 및 개선적 조치

“같은 맥락에서, 본 법정은 생명권과 존엄성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보안군의 구성원들이 충분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적시한 바 있다.... 고로, 국가는 합리적 범위의 기간 내에 경찰관을 대상으로 교도소 내 공공질서의 변화의 상황 속에서 수감자 처우에 관한 사항에 적용되는 국제기준에 관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행하여야 한다.”

(미구엘 카스트로-카스트로 감옥 대 페루 사건, 미주인권재판소, Merits and Reparations, 2006년 11월 25일)

나) 공정성 및 객관성

여러 국가들이 우려하는 한 가지는 인권 기준을 적용하는 평가 절차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기 이전 결정 과정에 다음의 요소들이 적용되어야 한다.

- 평가 절차는 모든 국가, 모든 무기 이전 허가에 구별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 무기 이전 허가 신청 각각에 대해 건별(case-by-case) 평가가 행해져야 한다.
- 무기, 예정된 수입자, 예정 용도, 무기 이전 관련자들과 이동 경로에 관해서 확실하고 믿을만한 출처에서 얻은 객관적이고 확인가능하고 자세한 정보가 사용되어야 한다.
- 적절한 건별(case-by-case)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인권기준과 인권침해에 대한 최신 정보가 사용되어야 한다.

4. 이전 결정에 대한 국제인권법의 실제적 적용

무기 이전 결정 과정에 관계하고 있는 면허 당국과 기타 정부 관리들을 조력하기 위해서는 무기 이전이 중대한 인권침해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실질적 위험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 명확하고 일관된 절차가 필요하다.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아래의 절차를 추천한다.

- (i) (무기 이전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관련한 수입국의 국제인권법 존중도 평가
- (ii) 장비의 특징, 기재된 최종사용 및 최종사용자, 무기 이전 관련자들, 이전 경로, 전용(diversion) 위험성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평가
- (iii) 당해 무기 이전이 중대한 인권침해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실질적 위험”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합적 평가에 기초하여 결정에 도달

가) 수입국의 태도

재래식 무기의 이전이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침해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위험에 대한 철저한 평가는 인권의무와 관련된 수입국의 전반적인 행동에 대한 조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국제인권법상의 의무를 존중하고 증진하기 위한 수입국의 태도를 평가할 때는 다음 지표들을 고려해야 한다.

- 관련 국제적·지역적 인권문헌에 대한 그 국가의 공식적인 약속
 - 수입국이 핵심 인권문헌의 당사국인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지역인권조약, 로마규정 등)
- 수입국의 인권의무가 국가 정책과 관행으로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기록
 - 수입국이 당사국인 인권문헌에서 요구되는 국내법규 채택 등의 이행조치를 채택했는가?
- 수입국이 인권의무의 존중과 증진에 필요한 입법, 사법, 행정적 수단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수입국이 그 국가 및 대리인에 의한 인권 침해를 조사할 법률과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는가?
- 수입국에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기소할 수 있는 관할권을 가지는 독립적이고 불편부당하며 기능하고 있는 사법제도가 있는가?
- 수입국이 보안군이나 경찰관리(그외 무기 소지자) 등의 같은 주요 부문에 국제인권법의 내용과 그 적용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가?
- 인권의무를 존중을 보장하고 인권침해의 가해자를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피해자에게 구제와 배상을 제공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정부기관이 있는가?
 - 인권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독립감시기구나 국가기관이 있는가?
 -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불처벌의 기록이 있는가?
 - 피해자에게 완전한 배상을 제공한 기록이 있는가?
- 국제적, 지역적 인권기구(예를 들어 유엔조약기구 및 특별절차)와의 협조의 정도
 - 주장이 제기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독립적 감시나 조사에 수입국이 동의하였는가? 그렇다면 그 결과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어떤 권고사항을 이행하였는가?)

나) 재래식 무기의 특징과 최종 사용자 및 사용에 대한 평가

건별(case-by-case) 분석이 이루어지려면 보다 구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평가의 목적은 인권의 중대한 침해가 예전에 있었는지 여부(상자 5 참조)와 그러한 침해가 심사 중인 재래식 무기의 이전에 의해서 촉진될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 평가에 있어 다음의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 통제목록에 해당하는 군사-치안 장비, 군수품 및 기타 물자들의 특징
- 이전과 관련하여 명시된 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에 대한 철저한 평가
- 수하 및 안전한 보관 확인을 위해 합의된 방식
- 전용(diversion) 위험성에 대한 평가

다) 재래식 무기의 특징에 대한 평가

- 당해 유형 혹은 비슷한 종류의 군사-치안장비 또는 통제목록 상의 다른 물자가 수령예정자에 의해 국제인권법이나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침해에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있는가?
- 당해 장비 혹은 다른 물자가 내부적인 치안 목적으로 의도되어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당해 유형 혹은 비슷한 종류의 무기의 사용이 수입국에서 인권과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침해, 특히 고문이나 기타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초법적 처형, 자의적 구금이나 강제실종 등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있는가?
- 장비나 기타 요청 물자의 유형과 질과 양이 명시된 최종사용자의 적법한 군사-치안경찰 필요성과 합치되는가?

라) 최종사용자 평가

최종사용자의 속성

- 기재된 최종사용자가 누구인가? 수령자가 국가이든 비국가단체(사실 군대 혹은 방위경비업체 회사 등)든 이에 상관없이 최종사용자에 대한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 수입국에서 최종사용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것은 합법적이고 정당한가?
- 최종사용자(보안군 등)가 명확하고 책무성이 보장되는 지휘통제계통 내에서 운영되는가?
- 수령자는 자신이 해당 장비나 기타 물자의 합법적인 실제 최종사용자임을 보증할 수 있는가?
- 수령자가 공급국가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 제 3자에게 당해 장비나 기타 물자들을 이전하면 안 된다는 점을 받아들였는가?

최종사용자의 역량

- 명시된 최종사용자에게 당해 장비나 기타 물자에 대한 정당한 필요성이 있는가?
- 최종사용자에게 당해 장비나 물자를 국제인권법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사용할 지식과 능력이 있는가? (예를 들어, 만일 무기 혹은 군수품의 이전이 군대에 의한 사용으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 그 무기 혹은 군수품을 사용할 군 또는 보안요원에 대한 인권법 및 국제인도법 교육과 책무성 보장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가?)
- 최종사용자가 당해 장비나 기타 물자의 수하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보관·배포하고, 적절히 관리·배치할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최종사용자의 인권 및 국제인도법 이행

- 국제인권기준과 국제인도법의 준수에 있어, 명시된 최종사용자의 행위가 (유엔감시기구, 국가인권 위원회나 국제인권단체에 의한) 중대한 우려의 대상인 적이 있었는가?
- 그렇다면, 수령국 혹은 최종사용자가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그러한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기소 등)를 취하였는가?

최종사용자의 무기 및 군수품 통제

- 수입국이 군사치안 장비 및 관련물자의 수입, 수출, 경우, 환적, 중개나 이와 밀접한 활동 및 면허생산 등과 관련해 효과적인 무기통제 법률, 규칙 및 행정 절차 등이 갖추어져 있는가? 그러한 제도 상에서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이 전적으로 참고되는가? 수령국의 통제목록이 수하 확인이나 향후 무기 이전에 대한 적법한 통제를 촉진시킬만큼 충분히 강력한가?
- 명시된 최종사용자가 잉여 무기나 군수품을 폐기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 적절한 무기 비축 관리 역량과 안전 절차를 갖추고 있는가?
- 수령국에 무기 비축분의 도난이나 유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가?
- 수령국에 불법 무기밀매나 무기 관련 부패 관행의 문제가 있는가?

마) 전용(diversion) 위험

- 수령자는 이전될 통제목록상의 장비나 기타 물자가 국제인권법 혹은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침해에 사용될 위험성이 있는 다른 실체나 목적지로 전용되거나 이전되지 않도록 보장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 수령자가 군사치안 장비와 관련 물품과 이들의 향후 이전에 대해 엄격하고 효과적인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가?
- 무기 및 군사치안 장비와 관련물자가 당해 수령자로부터 국제인권법 혹은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침해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제 3자에게로 전용되거나 재이전된 이전의 알려진 사례나 의심된 사례가 있는가? 전용의 위험성은 단지 미인가 사용자에게로의 전용뿐 아니라 인권과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침해에 장비를 오용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허가된 사용자에게로 전용하는 것과도 연관성이 있다.

바) 결정 내리기

- 국가는 위의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정보와 평가내용에 기초하여 제안된 군사치안 장비나 기타 통제목록에 포함된 물자의 이전이 국제인권법이나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침해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실질적 위험이 있는지, 또 그 여부에 따라 당해 이전이 허가되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최종 결정은 종합적 평가에 기초하여야 하며 결정은 당해 이전이 국제인권법이나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침해에 사용될 중대한 위험이 존재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다는 근거를 명확히 적시하여야 한다.

- 통제 목록 상의 물자 이전의 불허 결정은 인권 보호 원칙에 근거해 당해 무기의 예상 수명 동안 예상되는 용도를 전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결정은 상기 의미의 처벌적 조치의 일환이나 한 국가나 국가집단에 대한 경제·정치·군사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 광범위한 무기나 관련 물자가 인권의 중대한 침해나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에 사용되고 또 그외의 종류의 무기나 관련 물자가 그렇게 오용될 실질적 위험이 있는 경우 국가는 지체 없이 그러한 모든 종류의 무기나 관련 물자의 이전을 중단하거나 엠바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한 이전의 중지는 무기나 관련 물자가 인권의 중대한 침해나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으로 사용될 실질적 위험이 개선 조치를 통하여 사라질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사) 어느 시점에서 “실질적” 위험이 있다고 할 것인가?

이러한 “실질적 위험”의 분석은 관할 당국이 제안된 최종용도와 최종사용자와 관련하여 수입국에서 과거와 현재의 가용 증거를 바탕으로 건별로 수행해야 한다. 실질적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하는데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 제안된 최종사용자의 인권의무 준수와 관련한 현재와 과거 기록
 - 최근 중요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는가?
 - 인권 분야에 있어 정부 활동에 식별할만한 경향성(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이 있는가?
 - 만연적인 인권침해나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침해로 이어지는 상황을 유발시킬 것이 상당한 미래의 사건이 있는가? 결정을 도출함에 있어 현재의 상황과 그것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
- **기간:** 위험을 측정함에 있어 밝혀진 과거나 현재의 경향이 연속성을 띄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국제인권기준이나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에 대한 최근 증거와 그러한 침해가 재발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위험성에 대한 명확한 지표가 된다. 과거 중대한 침해에 대한 증거는 그 자체로 현재나 미래에 관해 충분히 신뢰할만한 지표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전히 관련성이 있다. 그러한 정보는 다른 적절한 제도적 요인들과 함께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 국제인권법 위반의 **단발적** 사례들이 꼭 그러한 법에 따른 의무에 대한 수령자의 태도나 헌신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단발적 사례들 무기 이전을 불허할 충분한 근거는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례가 **경향화되었다는 증거**가 있거나 수령자가 인권침해를 종식시키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실질적 위험의 가능성은 더 커진다.
- 실질적 위험에 대한 결정은 신뢰할 만한 증거를 가지고 명확한 기준을 체계적으로 적용한 객관적인 정보에 근거한 판단에 근거해야 한다. 또 그러한 결정은 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에 기반한 균형 잡힌 판단이어야 한다.

상자 5: 불확실성?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경우 국가는 수령국이나 다른 출처에서 추가정보나 해명을 받아야 한다.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실질적 우려가 있는 경우나 이전 허가가 나기 전에 현실적으로 예방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경우(제안된 최종사용자를 대상으로 장비와 인권책무성에 대한 훈련을 하는 등), 수출·수입 정부는 그러한 조치를 이행할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논의는 재래식 무기 이전의 잠재적 허가에 관해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갈 것에 대한 예상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또 무기 이전을 허가하는 그 어떤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합의된 예방 조치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실질적 우려가 지속되는 환경에서는 무기 이전 허가가 나서는 안된다.**

아) 국내 입법

상기의 원칙들과 지침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법규가 정확한 용어, 구체적인 절차로 기술되어 모호함을 피하고 법의 목적과 상충하는 해석의 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또 법규의 목적과 조항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부합하여야 한다.

국내법은 입법부가 법의 시행에 적절한 통제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통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모든 무기 이전이 입법 위원회에 의하여 면밀히 조사되고, 중대한 인권침해나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에 대한 실질적 위험이 있는지 미리 평가되고, 수령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가 발행되도록 하고, 비정부기구나 기타 출처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통로가 구축되도록 규정해야 한다.

5. 정보 출처

국가가 무기 이전 결정 과정에서 판단을 내리는데 관련 있는 신뢰할만하고 입증 가능한 정보 출처를 참고하여야 한다. 그러한 정보 출처는 다음을 포함한다.

- 유엔 인권기구, 국제적십자위원회나 그 밖의 국제·지역기구의 문서들
- 국제인권단체의 보고서
- 현지 비정부기구 등 신뢰할 만한 현지 출처의 보고서
- 신뢰할 만한 언론 보도
- 수령국 주재 외국 공관
-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서 등의 국가 인권 보고서
- 국제형사재판소나 특별재판소의 결정문과 보고서
- 무기 이전이나 인권 문제에 대한 학술·연구·정책 기관의 연구자료

부록: 국제인권문헌

아래의 목록은 현존하는 국제인권문헌 전부를 포함한 것은 아니다.

일반

- [UN]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 [UN] 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
-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
-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1966, monitoring,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ESCR]
-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1966, monitoring, Human Rights Committee [HRC]
- (first)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66
-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1989
- [UN] United Nations Millennium Declaration, 2000
- [UN]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1993
- [AU] 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abbreviation, African Charter]
- [AU] Protocol to the 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 [AU] Protocol to the 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on the Establishment of an African Court on Human and Peoples' Rights
- [CoE] Additional Protocol to the European Social Charter Providing for a System of Collective Complaints
- [CoE]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bbreviation,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 [CoE] European Social Charter
- [CoE] Protocol Amending the European Social Charter
- [League of Arab States] Council of the League of Arab States, Arab Charter on Human Rights, 1994
- League of Arab States, Revised Arab Charter on Human Rights, 2004
- Council of the League of Arab States, Arab Charter on Human Rights, 2004
- [OAS]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lso known as, "Pact of San José, Costa Rica"]
- [OAS] American Declaration of the Rights and Duties of Man

법집행

- [UN] Basic Princip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 [UN] Basic Principles on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 [UN] Basic Principles on the Role of Lawyers
- [UN] Basic Principles on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 [UN] Body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under Any Form of Detention or Imprisonment
- [UN] Code of Cond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 [UN] Guidelines on the Role of Prosecutors
- [UN]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 [UN] United Nations 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of Juvenile Delinquency (also known as, The Riyadh Guidelines)
- [UN] United Nations Rules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s Deprived of their Liberty
- [UN]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Non-custodial Measures (also known as, The Tokyo Rules)
- [UN]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 (also known as, "The Beijing Rules")

기업체, 기관

- [UN] Norms on the Responsibilities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with Regard to Human Rights [abbreviation, Business Norms]
- [UN] 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 [also known as, "The Paris Principles"]
- [AU] Convention on Preventing and Combating Corruption
- [OAS] Inter-America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아동

- [UN]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
-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monitoring,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 [UN]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 [UN]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 [UN]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 [AU] African Charter on the Rights and Welfare of the Child
- [ILO] ILO Convention No. 182 on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1999
- [OAS] Inter-American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ffic of Minors

사형

- [UN] Safeguards guaranteeing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ose facing the death penalty
- [UN]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 [CoE] Protocol No. 6 to the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concerning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 [CoE] Protocol No. 13 to the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concerning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in all circumstances
- [OAS] Protocol to the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차별, 인종주의, 선주민, 소수집단, 장애인

- [UN]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Intolerance and of Discrimination Based on Religion or Belief
- [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 [UN] Durban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2001
- [UN]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monitoring,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
- [UN]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s with mental illnesses and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care
- [UN] Standard Rules on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CoE] Protocol No. 12 to the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concerning the general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 [ILO] ILO Convention No. 169 on Indigenous and Tribal Peoples, 1989
- [OAS] Inter-American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경제 · 사회 · 문화적 권리

- [UN]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1966, monitoring,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ESCR]
- [UN]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OAS] Additional Protocol to the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in the Area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lso known as, "Protocol of San Salvador"]

고용 및 강제노동

-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conventions:
- [ILO] ILO Convention No. 29 on Forced Labour, 1930
- [ILO] ILO Convention No. 87 on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se, 1948
- [ILO] ILO Convention No. 97 on Migration for Employment (Revised), 1949
- [ILO] ILO Convention No. 98 on the Right to Organise and Collective Bargaining, 1949

- [ILO] ILO Convention No. 100 on Equal Remuneration, 1951
- [ILO] ILO Convention No. 105 on the Abolition of Forced Labour, 1957
- [ILO] ILO Convention No. 107 on Indigenous and Tribal Populations, 1957
- [ILO] ILO Convention No. 111 on Discrimination (Employment and Occupation), 1958
- [ILO] ILO Convention No. 138 on Minimum Age, 1973
- [ILO] ILO Convention No. 143 on Migrant Workers (Supplementary Provisions), 1975
- [ILO] ILO Convention No. 169 on Indigenous and Tribal Peoples, 1989
- [ILO] ILO Convention No. 182 on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1999
- [ILO]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1988

인권옹호자

- [UN] Declaration on the Right and Responsibility of Individuals, Groups and Organs of Society to Promote and Protect Universally Recognized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bbreviation,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

국제인도법

- [ICRC] Geneva Conventions:
- Geneva Convention for the Amelioration of the Condition of the Wounded and Sick in Armed Forces in the Field [also known as, First Geneva Convention]
- Geneva Convention for the Amelioration of the Condition of Wounded, Sick and Shipwrecked Members of Armed Forces at Sea [also known as, Second Geneva Convention]
- Geneva Convention relative to the Treatment of Prisoners of War [also known as, Third Geneva Convention]
- Geneva Convention relative to the Protection of Civilian Persons in Time of War [also known as, Fourth Geneva Convention]
- Protocol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2 August 1949, and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also known as, Protocol I]
- Protocol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2 August 1949, and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known as, Protocol II]

난민, 비호신청인, 이주민, 국적

- [UN]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abbreviation, Migrant Workers Convention], monitoring, Committee on Migrant Workers
- [UN]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 [UN] Declaration on the Human Rights of Individuals Who are not Nationals of the Country in which They Live
- [UN] Guiding Principles on Internal Displacement
- [UN]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 [AU] Convention Governing the Specific Aspects of Refugee Problems in Africa
- [CoE] European Convention on the Legal Status of Migrant Workers
- [ILO] ILO Convention No. 143 on Migrant Workers (Supplementary Provisions), 1975

고문, 부당한 대우, 강제실종, 초법적 처형

- [UN]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bbreviation, Convention against Torture] monitoring, Committee against Torture [CAT]
- [UN]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Being Subjected to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 [UN]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 [UN]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monitoring, Committee on Enforced Disappearances
- [UN]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bbreviation,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 [UN] Principles of Medical Ethics relevant to the Role of Health Personnel, particularly Physicians, in the Protection of

- Prisoners and Detainees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 [UN] Principles on the Effective Investigation and Documentation of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 [UN] Principles on the Effective Prevention and Investigation of Extra-legal, Arbitrary and Summary Executions
- [AU] Guidelines and Measures for the Prohibition and the Prevention of Torture,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in Africa (also known as, Robben Island Guidelines), 2002
- [CoE]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and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 [OAS] Inter-American Convention on Forced Disappearance of Persons
- [OAS] Inter-American Convention to Prevent and Punish Torture

인신매매, 노예

- [UN]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
-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Recommended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Human Rights and Human Trafficking
- [UN] Protocol against the Smuggling of Migrants by Land, Sea and Air,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Crime
- [UN]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 [UN] Slavery Convention
- [UN] Supplementary Convention on the Abolition of Slavery, the Slave Trade, and Institutions and Practices Similar to Slavery
- [UN]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 [CoE]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Action against Trafficking in Human Beings
- [OAS] Inter-American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ffic of Minors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범죄

- [UN] Convention on the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 [UN]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 [UN]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Elements of Crimes
- [UN]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Rules of Procedure and Evidence
- [UN]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여성

- [UN] 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of Action,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Beijing, 1995
- [UN]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
- [UN]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monitoring,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 [UN]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 [UN]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UN] Outcome document of the twenty-third special session of the UN General Assembly, Women 2000: Gender Equality, Development and Peace for the 21st Century, 2000 [also known as, “Beijing +5”]
- [UN]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 [AU] Protocol to the 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on the Rights of Women in Africa
- [OAS] Inter-American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Punishment, and Eradic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also known as, “Convention of Belém do